#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15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이연희·임미애·이기헌

김한규 • 박홍배 • 박상혁

홍기원 • 허종식 • 맹성규

김남희 · 손명수 · 복기왕

한민수 · 김정호 · 황 희

윤후덕 • 이정문 • 한준호

민형배 • 윤종군 의원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을 위해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

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 법률 제 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을 "(경력보유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경력보유여성(이하 "경력보유여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	제17조의2(경력보유여성의 능력
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고용	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임신・출산・육	
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	
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	경력보유여성(이하 "경력보유
<u>여성"이라 한다)</u> 을 위하여 취업	<u> 여성"이라 한다)</u>
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	
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	②
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u>경력단</u>	<u>경력보유</u>
<u>절여성</u> 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	<u> 여성</u>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